

서울 광진구 자양제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협의체는 『자양제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』 (이하 『본 협의체』 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 협의체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성을 통하여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계층, 위기가정, 취약계층 등을 상시 발굴하고 지원체계 구축으로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위 원

제3조(구성)

1. 협의체 구성은 10명 이상으로 하며,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.
2. 협의체 위원장은 동 협의체를 대표하고, 업무를 총괄하며 구 지역보장 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참여한다.
3. 협의체 위원은 동장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 - ①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②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
 - ③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 - ④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 - ⑤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
 - ⑥ 통장, 주민자치위원, 자원봉사단체 구성원
 - ⑦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의 위해측)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

1.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2.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
3. 동 협의체 운영취지,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4.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,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3장 회의 및 역할

제6조(회의)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1.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도록 한다.
2.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.
3.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역할)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계·협력 업무를 행한다.

1.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
2.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
3. 지역보호체계 구축·운영
4.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8조(간사)

1. 간사는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며, 간사는 민·관 위원 중 호선한다.
2.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안건 및 현황을 보고한다.
3. 간사는 협의체의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.

제4장 회의록

제9조(작성)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1.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
3. 심의사항
4. 심의결과
5.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5장 기 타

제10조(비밀준수 의무) 협의체 위원은 협의체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사례관리 대상자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1조(회비)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비를 수납한다.

1. 정기회비는 매월 둘째주 수요일에 10,000원씩 납부한다.

제12조(회비지출) 본 회의 회비 지출은 다음과 같다.

1. 월례회의 후 식비
2. 타 단체 행사시 찬조
3. 설·추석명절시 1:1결연 어르신 방문 기념품 구입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운영세칙은 정기회에서 가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자양제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황 인 옥